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불평등 완화 기본법안 및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불평등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 등 마련〉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222호)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578호)

2026. 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3
IV. 검토의견	7
1. 제정안의 입법취지	7
2. 제정안의 주요내용	11
3. 총괄적 검토	14
가. 다차원적 불평등에 대한 종합적 대응의 필요성	14
나. 별도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기존 법체계와의 관계	15
다. 관계 기관 의견	19
4. 조문별 검토	21
가. 제명 및 법률의 목적	21
나. 불평등 등의 정의	25
다.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	29
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5
마. 실태조사·지표개발 및 실적평가 등	44
바. 불평등 정책의 추진 기관	53
사. 평가결과와 재정운용의 연계	66
아. 정책개선의 권고	70
자. 공론화	74
차. 분야별 불평등 정책	77
카. 그 밖의 사항	84
V. 입법의 재정영향	90

I. 제안경위

1.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222호)

가. 발 의 자 : 정태호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6. 7. 29.

다. 회 부 일 : 2026. 8. 6.

2.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578호)

가. 발 의 자 : 문진석의원 등 22인

나. 발 의 일 : 2026. 8. 13.

다. 회 부 일 : 2026. 8. 14.

II. 제안이유

1.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222호)

최근 우리 사회는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은 상호 연계·누적되면서 다차원적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음. 특히 각 영역의 불평등은 세대 간 이전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재생산으로 이어져 사회 이동성을 저해하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 통합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반면, 현행 제도는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개별 영역별 법률에 따라 분산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다차원적 불평등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 추진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불평등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는 지표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체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다차원적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측정·평가하고,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기회평등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2.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578호)

우리 사회는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각 영역에서 발생한 불평등이 상호 연관되어 누적·강화되는 다차원적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후위기·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발생하거나 기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개별 영역별 불평등 문제를 각각 다루고 있을 뿐, 다차원적 불평등 현상을 고려한 불평등 해소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불평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표 체계와 정책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는 기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불평등해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관리, 불평등 실태조사, 추진실적 평가 및 정책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1.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222호)

- 가. 이 법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기회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불평등의 측정·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불평등, 다차원적 불평등, 다차원적 불평등지표 및 취약계층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 다. 불평등 완화 정책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시행 및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에 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라. 국무총리는 5년마다 불평등 완화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 불평등 실태조사,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보급 및 평가,

불평등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을 통하여 정책의 근거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불평등 완화 정책의 종합적 조정 및 협력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불평등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주요 영역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정부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 결과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평등 완화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2.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578호)

가. 이 법은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불평등과 기후위기·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나타나는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의 실질적인 기회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정하고, 불평등, 다차원적 불평등,

다차원적 불평등지표, 불평등 해소 정책 및 취약계층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국가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통계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불평등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불평등대응위원회를 둠(안 제6조 및 제7조).

마. 불평등대응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국무총리·민간전문가 각 1명인 부위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신분보장 및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불평등대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사무기구를 두고,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사. 불평등대응위원회는 5년마다 불평등해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불평등대응위원회는 다차원적 불평등지표를 개발·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차원적 불평등 수준을 평가·공표하며, 5년마다 주요

영역의 불평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자. 불평등대응위원회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공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매년 불평등 해소 정책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함(안 제21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주요 영역별 불평등과 기후위기·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화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카. 불평등대응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 개선 또는 제도 정비를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론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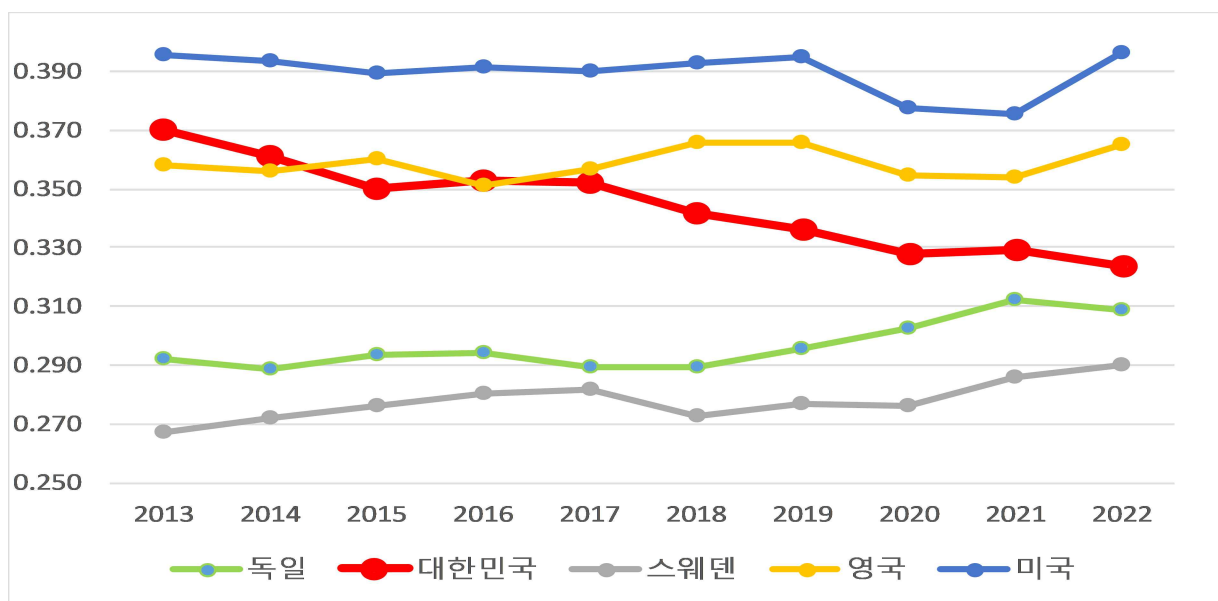
타. 불평등대응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매년 결과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1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입법취지

현재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 불평등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OECD 주요국의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계수¹⁾의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3년 0.370으로 미국보다는 낮았으나 영국·독일·스웨덴보다는 높아 비교대상 국가 중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었음. 그러나 이후 지니계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에는 0.324로 낮아졌으며, 같은 기간 독일·스웨덴 등과의 격차도 축소되는 등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OECD 주요국가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추이(2013-2022)]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OECD Data Explorer

1)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 간 관계를 이용하여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함.

다만, 이러한 소득 불평등의 개선 추세만으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불평등 수준이 완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자산·교육·건강·주거·지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분석결과²⁾에 따르면, 소득 이외의 자산·교육·건강·주거 등에서도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격차가 확인되고 있어 소득지표만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상을 충분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산의 경우, 2024년 기준 부동산이 가구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5%에 달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의 상승 정도에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실제로 전국의 m²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13년 324.8만원에서 2024년 625.7만원으로 92.6% 상승하였으나, 같은 기간 연평균 상승률은 서울 9.1%, 수도권 7.4%, 전국 6.1%, 6대 광역시 5.5%, 기타 지방 3.6%로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음. 이는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거주지역에 따른 부동산 자산 가치의 격차가 자산격차와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또한, 교육·건강·주거 등의 영역에서도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교육 분야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이 높은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향이동성 지수³⁾’가

2)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주소 - 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 2025;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국회,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주소 드러낸 “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 12.23(화) 발표 - 자산을 중심으로 양극화 커지는 구조적 불평등 심화」, 2025년 12월 22일자

3) ‘상향이동성 지수’란 성취도 상위 25%인 학생 중 사회경제적 배경이 하위 25%에 속하는 학생의 비율을 의미함

2006년 13.4%에서 2022년 10.5%로 낮아지는 등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건강 분야에서는 소득 상·하위 20% 간 기대수명 격차가 2012년 6년에서 2017년 6.5년으로 증가하였고, 고령층, 저소득층, 저학력, 농촌지역 등 취약집단일수록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유병률과 우울감, 스트레스, 정신건강,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의 행태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2022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19.8%인 반면 소득 상위 20%은 12.3%으로 분석되었음.

주거 분야에서도 세대별로 상이한 형태의 주거취약성이 나타나고 있음. 청년층은 월세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가 거주 비율은 낮은 반면, 고령층은 전체적으로 자가 거주 비율이 높지만 지하·반지하·옥탑 등 거주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여 내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주요 영역별 불평등 관련 분석 주요 내용 (국회입법조사처 등)]

영역	지표	주요내용
자산	m ² 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2013년 324.8만원 → 2024년 625.7만원
	아파트가격 연평균 상승률	서울 9.1%, 수도권 7.4%, 전국 6.1%, 기타 지방 3.6%
교육	상향이동성 지수	2006년 13.4% → 2022년 10.5%
건강	소득 상·하위 20% 기대수명 격차	2012년 6년 → 2017년 6.5년
	만성질환 유병률(2022년)	소득 하위(20%) 19.8%, 소득 상위(20%) 12.3%
주거	연령별 월세거주비율(23.0%)	20대 이하 68.6%, 30대 33.0%, 40대 20.1%, 50대 18.6%, 60대 16.5%, 70대 이상 12.1%

자료: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주소 - 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 2025 참고 후 작성

한편, 현재 불평등 해소와 관련된 정책은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지역 등 각 분야별로 관계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립·추진되고 있으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상호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연계·조정하는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음.

특히, 불평등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나타나기보다는 소득·자산 등 경제적 여건이 교육·건강·주거 등의 격차와 상호 연계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부처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복합적·다차원적인 불평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각 제정안은 개별 영역의 불평등에 각각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영역의 불평등과 그 상호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연계·조정할 수 있는 정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차원적 불평등의 개념을 도입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불평등 실태조사,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평가 및 범정부적 정책조정체계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제정안의 주요내용

각 제정안은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이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불평등의 측정·평가 및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각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복수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 상호 연관되어 심화되는 상태를 다차원적 불평등으로 규정하고, 이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각 제정안은 불평등의 현황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평등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주요 영역별 불평등 완화·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구체적인 정책 추진체계와 위원회의 지위·권한 등에서는 차이가 있음. 정태호의원안은 국무총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불평등완화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체계를 두고 있는 반면, 문진석의원안은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가 기본계획의 수립,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관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문진석의원안은 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다음 연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며, 그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밖에도 위원회의 정책개선 권고 및 이행상황 점검, 공론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두 제정안의 주요내용 비교]

구 분		정 대 호 의 원 안	문 진 석 의 원 안
법률명		불평등 완화 기본법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정책목표		불평등 완화	불평등 해소
주요 개념	불평등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 등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개인 또는 집단 간에 발생하는 현저한 격차	사회 구성원 간 자원, 기회 및 지위 등이 구조적으로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사회경제적 격차가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상태
	다차원적 불평등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복수 영역의 불평등이 상호 연관되어 심화되는 상태	복수의 사회경제적 영역의 불평등이 상호 연계되어 심화되는 상태
계획 수립	기본계획	국무총리가 5년마다 수립	불평등대응위원회가 5년마다 수립
	시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	
	실태조사	정부가 3년마다 실시	위원회가 5년마다 실시
평가 체계	다차원적 불평등지표	정부가 개발·보급하고 불평등 수준 평가 시 활용	위원회가 개발·관리하고 불평등 수준 조사·평가 시 활용
	평가주체	국무총리	불평등대응위원회
	평가대상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후속조치	평가결과를 불평등완화위원회 통보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재정연계	별도 규정 없음	평가결과의 재정운용 반영 가능

구 분		정 대 호 의 원 안	문 진 석 의 원 안
추진 체계	위원회	불평등완화위원회	불평등대응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대통령
	위원구성	25명 이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총리가 위촉한 관계 전문가)	20명 ~ 25명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이 위촉하는 관계 전문가)
	주요기능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실적 점검 3. 불평등 완화 정책의 조정·협력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1. 불평등 해소 정책의 기본방향 2.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3. 시행계획의 심의·조정 4. 불평등 해소 정책의 조정·협력 5.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관리 6. 불평등 해소 정책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지원조직	별도 없음	사무기구 설치
불평등 대응 정책 분야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지역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 사회변화에 따른 불평등 해소
정책개선 권고		별도 규정 없음	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정책개선 및 제도정비 권고 후 이행사항 공표
공론화		별도 규정 없음	위원회가 주요 사항에 대한 공론화를 실시하는 근거 명시
국회보고		기본계획·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불평등 종합보고서의 국회 제출	

3. 총괄적 검토

가. 다차원적 불평등에 대한 종합적 대응의 필요성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각 영역의 불평등은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개인 또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소득 및 자산 수준의 차이는 교육기회나 주거여건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고, 교육·주거여건의 차이는 다시 고용·소득 및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서로 다른 영역의 불평등이 상호 연계되어 누적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점에서 소득분배 등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불평등을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양한 영역의 불평등과 그 상호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특히 두 제정안이 다차원적 불평등의 개념을 도입하고, 실태조사 및 다차원적 불평등지표를 통해 불평등의 수준과 상호 연계성을 측정·분석하는 한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통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종합·조정하려는 것은 기존의 분야별 접근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일정한 입법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불평등 관련 정책은 소득지원, 교육, 보건의료, 주거, 지역정책 등 여러 부처와 정책영역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므로, 개별 정책의 효과만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정책이 불평등의 완화·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일

필요성도 있음.

따라서 다차원적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측정·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평가 및 조정에 활용하는 범정부적 정책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별도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기존 법체계와의 관계

불평등 완화·해소와 관련된 정책은 현재에도 사회보장·교육·보건 의료·주거·지역균형발전 등 개별 분야의 법률 및 정책체계에 따라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공공부조뿐만 아니라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 등의 분야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를 사회보장의 범위에 포함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하여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역 간 격차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균형성장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보건의료·주거·고용 등 주요 정책영역에서도 개별 법률에 따라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통계 및 정책 평가 등을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체계가 운영되고 있음.

[현행 법체계상 주요 분야별 불평등 대응 정책체계]

분야	관련법률	주요 정책수단	불평등 관련 주요내용
사회보장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정책 심의·조정	사회보험·공공부조 및 사회서 비스를 포괄하여 사회보장정책을 심의·조정
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지역 간 격차 완화 및 균형성장시책 추진	지역 간 발전격차 완화, 지역의 자립적 발전 및 균형성장 추진
보건의료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보건의료 실태·통계 등을 정책에 활용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와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한 중·장기 보건 의료정책 추진
주거	「주거기본법」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 정책 추진	주거수준 향상, 주거복지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취약계층 지원
고용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취업취약계층 지원 등 고용정책 추진	고용기회 확대, 취업취약계층 지원 및 노동시장 격차 완화

이처럼 불평등과 관련된 정책이 이미 여러 개별 법률과 정책체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평등이 여러 정책영역에 걸친 횡단적 문제라는 점만으로 별도의 기본법과 기본계획·위원회·조사체계를 신설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별도의 기본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기존 정책체계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기능과 입법적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최근에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특정 부처나 개별 정책영역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거시적 과제에 대하여 별도의 기본법을 제정하고 범정부적 정책추진체계를 마련하는 입법례도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인구전략기본법」은 대통령이 위원장인 인구전략위원회⁴⁾를 통해 인구정책에 관한 중·장기 국가전략과 기본

4)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인구전략위원회) ①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연계
 ・조정하는 체계를 두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⁵⁾를 통하여 관계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등

전략위원회를 둔다.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분석 및 변화추이 예측
2.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에 수반되는 사회구조 및 경제환경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인구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구정책 중 유사・중복 사업 등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7. 인구정책에 대한 중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인구전략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호가목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대통령비서실의 인구전략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저출생 및 고령화와 지역・이민・신기술 등 인구문제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⑤ 인구전략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1호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⑥ 인구전략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인구전략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제4항제4호가목의 위원이 된다.
- ⑧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⑨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 재정・금융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1인
-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범정부적 정책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례를 고려하면, 불평등 역시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여러 정책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각 영역의 불평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기본법을 통해 이를 국가적·거시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부처의 정책을 연계·조정하는 정책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두 제정안의 입법적 의의는 기존 개별 법률에 따른 소득·교육·건강·주거 등의 정책을 다시 규정하는 데 있기보다는, 개별 정책영역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다차원적 불평등의 수준과 상호 연계성을 측정·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및 정책영역 간 정책을 연계·조정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별도의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차원적 불평등의 측정·분석, 정책 간 연계·조정 및 평가결과의 환류 등 기존 법체계와 구별되는 고유한 기능이 실제 제도설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기존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실태조사·위원회 및 정책평가 체계와의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관계 기관 의견

(1)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법안의 발의취지와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평등의 정의 및 정책추진 범위에 산업·노동 분야를 추가하고, 불평등 완화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주체를 국무총리에서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불평등완화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정책 조정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분야별 관계부처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불평등 완화 사업의 통합 관리와 성과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에 관련 사업예산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위원회법 상 중복·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불평등대응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기보다는 국민통합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사회대개혁위원회·사회보장위원회 등 기존 유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별도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사무국 설치 여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시·도지사에게 연도별 불평등 완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국세청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행정데이터 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제정안의 과세정보 요구 근거가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표준입법모델에 부합하지 않아 현행 규정만으로는 과세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과세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제공 대상·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조문별 검토

가. 제명 및 법률의 목적(정태호·문진석의원안 제1조)

정태호의원안	문진석의원안
○ 제명 - 불평등 <u>완화 기본법</u> ○ 목적(안 제1조) - <u>사회 전반의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기회평등을 보장</u>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불평등의 측정·평가·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명 - 불평등 <u>대응 및 해소</u>를 위한 <u>특별법</u> ○ 목적(안 제1조) - <u>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불평등과 기후위기·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나타나는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관리</u>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

두 제정안은 사회 전반의 불평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법률의 명칭·성격과 정책목표 및 정책대상으로 하는 불평등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음.

(1) 법률의 명칭 및 성격

법률의 명칭 및 성격과 관련하여, 정태호의원안은 법률명을 「불평등 완화 기본법」으로 하고 불평등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으로 규정한 반면, 문진석의원안은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불평등 문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불평등은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그 원인과 정도도 상이하므로 모든 사회경제적 격차를 제거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두 제정안이 개별적인 차별행위의 금지·시정보다는 불평등의 측정·분석과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평등의 ‘해소’보다는 ‘완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법률의 내용 및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한편, 법률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두 제정안은 특정한 정책영역에 대하여 기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특례를 정하기보다는,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여러 정책영역에 걸친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불평등지표의 개발·활용, 실태조사 및 정책의 심의·조정 등 관련 정책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구전략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도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정책영역에 걸쳐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정책에 대하여 그 기본방향과 국가의 책무, 기본계획 및 정책의 심의·조정 등 추진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기본법의 형식으로 입법한 사례가 있음.

따라서 두 제정안의 규정 내용과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사항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특별법’보다는 불평등 완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정하는 ‘기본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의 실질적 성격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2) 정책목표 및 정책대상

두 제정안은 법률안의 목적 규정에 해당 법률에 따른 정책목표 및 정책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정태호의원안은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사회경제적 영역의 불평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문진석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기후위기·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나타나는 불평등을 명시적으로 정책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기후위기·디지털 전환 등 사회환경의 변화는 소득·고용·교육·건강·지역 및 정보접근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 기존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새로운 형태의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⁶⁾, 이러한 변화에 따른 불평등까지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또한, 불평등의 구체적인 양상은 사회·경제·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의 정책대상을 현재 확인되는 불평등 영역에 한정하기보다는 향후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평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의 포괄성 및 정책대응의 유연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

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기존의 취약성·불평등이 상호작용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기후변화가 기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IPCC,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Chapter 8, 2022, pp. 1174-1175).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는 기후변화가 일자리와 소득의 감소, 산업안전·보건 위험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 노동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이 성별 및 취약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취약하거나 배제된 집단에 더 크게 집중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ILO, Gender, Equality and Inclusion for a Just Transition in Climate Action, 2024, p.vii). 한편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ILO)는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도입·활용 수준의 국가 간 격차가 기존의 소득 및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고소득국이 인공지능 발전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누리는 반면 저·중소득국은 뒤처지는 ‘인공지능 격차(AI divide)’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또한 디지털 인프라 및 인공지능 관련 역량의 격차가 향후 생산성 및 경제적 번영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UN·ILO, Mind the AI Divide: Shaping a Global Perspective on the Future of Work, 2024, pp. 3, 5.).

※ 제정안 원문

정태호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기회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불평등의 측정·평가·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기회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불평등의 측정·평가·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불평등 등의 정의 (정태호의원안 제2조, 문진석의원안 제3조)

정태호의원안	문진석의원안
○ 정의(안 제2조) - 불평등: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 등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개인 또는 집단 간에 발생하는 현저한 격차	○ 정의(안 제3조) - 불평등: 사회 구성원 간 자원, 기회 및 지위 등이 구조적으로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사회경제적 격차가 지속·확대되는 상태
- 불평등 완화 정책: 불평등 완화를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	- 불평등 해소 정책: 불평등 해소를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
- 다차원적 불평등: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 등 복수의 영역에서 발생한 불평등이 상호 연관되어 심화되는 상태	- 다차원적 불평등: 복수의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발생한 불평등이 상호 연관되어 심화되는 상태
- 다차원적 불평등지표: 다차원적 불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	- 다차원적 불평등지표: 다차원적 불평등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
- 취약계층: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 등의 측면에서 불평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계층	- 취약계층: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의 측면에서 불평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계층

두 제정안은 ‘불평등’, ‘다차원적 불평등’, ‘다차원적 불평등지표’, ‘불평등 완화(해소) 정책’ 및 ‘취약계층’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개념은 동일하거나 유사함. 다만, 불평등의 개념을 규정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음.

정태호의원안은 불평등을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개인 또는 집단 간에 발생하는 현저한 격차’로 정의하는 반면, 문진석의원안은 사회 구성원 간 자원·기회 및 지위 등이 ‘구조적으로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사회경제적 격차가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음.

정태호의원안은 불평등이 나타나는 주요 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어느 정도의 격차를 ‘현저한 격차’로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반면 문진석의원안은 불평등의 구조적 성격과 지속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자원·기회 및 지위의 구조적으로 불균등한 분배’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정책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제정안은 불평등의 측정·분석과 관련 정책의 연계·조정을 위한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정책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으나, 반대로 불평등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할 경우 기본계획·실태조사·지표 및 정책평가의 대상도 불명확해질 수 있음.

따라서, 불평등을 정의함에 있어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주요 사회경제적 영역을 예시하여 정책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자원·기회 등에 대한 분배 또는 접근의 차이로 인하여 개인 또는 집단 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지속되거나 심화되는 상태라는 불평등의 특성을 함께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⁷⁾.

한편, 다차원적 불평등은 두 제정안 모두 복수의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 상호 연관되어 심화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인 내용은 유사함. 다만, 정태호의원안은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주요 사회경제적 영역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반면,

7) 두 제정안의 정의 규정을 바탕으로 불평등에 대한 정의를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 등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자원, 기회 및 지위 등의 분배 또는 접근의 차이로 인하여 개인 또는 집단 간에 발생하거나 지속·확대되는 사회경제적 격차”로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문진석의원안은 이를 ‘복수의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다차원적 불평등의 주요 영역을 법률에 예시하는 것은 정책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등’의 표현을 통하여 향후 사회·경제·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불평등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의 사회경제적 영역 중 복수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 상호 연관되어 심화되는 상태”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의 불평등의 정의 및 범위와 관련해서 재정경제부는 다양한 불평등 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불평등의 정의와 정책추진 범위에 산업, 노동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임.

※ 제정안 원문

정태호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평등”이란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 등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개인 또는 집단 간에 발생하는 현저한 격차를 말한다.	1. “불평등”이란 사회 구성원 간 자원, 기회 및 지위 등이 구조적으로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사회경제적 격차가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불평등 완화 정책”이란 불평등 완화를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다차원적 불평등”이란 복수의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발생한 불평등이 상호 연관되어 심화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다차원적 불평등”이란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 등 복수의 영역에서 발생한 불평등이 상호 연관되어 심화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다차원적 불평등지표”란 다차원적 불평등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말한다.
4. “다차원적 불평등지표”란 다차원적 불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말한다.	4. “불평등 해소 정책”이란 불평등 해소를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취약계층”이란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 등의 측면에서 불평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계층을 말한다.	5. “취약계층”이란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의 측면에서 불평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계층을 말한다.

다.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정태호의원안 제3조, 문진석의원안 제2조)

정 태 호 의 원 안	문 진 석 의 원 안
○ 기본원칙(안 제3조) 1.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각 영역의 불평등은 상호 연관되어 누적·심화될 수 있으므로,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통한 불평등의 심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불평등의 측정·평가 및 정책의 수립·시행은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야 하며, 국민의 체감 수준과 실제 현황 간의 괴리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불평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취약 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6. 불평등 완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기본이념(안 제2조) - 국민의 실질적인 기회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

정태호의원안은 불평등 완화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①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불평등의 적극적 완화, ② 불평등 영역 간 상호 연관성의 통합적 고려, ③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통한 불평등 심화 방지 및 사회적 이동성 확보, ④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정책 추진 및 국민의 체감 수준 고려, ⑤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배려, ⑥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당사자·전문가 및 국민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문진석의원안은 별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국민의 실질적인 기회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기본이념은 해당 법률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는 반면, 기본원칙은 법률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능상 차이가 있음. 따라서 양자를 반드시 선택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실질적인 기회 평등과 사회경제적 격차의 완화라는 기본적 가치를 기본이념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행의 기준을 기본원칙으로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참고로, 다른 기본법 상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양성평등기본법」 및 「인구전략기본법」에서는 문진석의원안과 같이 기본이념만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정태호 의원안과 같이 기본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음.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에 대한 참고 입법례]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인구전략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 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파급 효과 및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하고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8.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한편, 정태호의원안의 기본원칙은 국제적인 불평등 관련 정책논의와도 대체로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OECD는 소득·교육·직업·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기회의 차이와 사회이동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다루고 있으며, 교육·건강·자산·주거·지역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통해 기회의 평등과 사회이동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강

조하고 있음⁸⁾. 또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서는 불평등과 취약성을 완화하고 모든 사람과 사회집단이 발전의 과정과 성과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Leave No One Behind)’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⁹⁾

따라서 불평등의 다차원성 및 영역 간 상호 연관성, 사회적 이동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및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평등 정책의 일관된 추진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3호는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통한 불평등의 심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불평등의 세대 간 고착·심화와 사회적 이동성에 관한 기본원칙을 자산의 세대 간 이전에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소득·교육·고용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세대 간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8) OECD는 사회이동성을 세대 간·세대 내 이동성과 절대적·상대적 이동성으로 구분하고,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직업·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성취와 사회이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 분석 결과, 저소득·저학력 등 불리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낮은 교육·소득·직업적 지위 등으로 이어지는 ‘고착된 바닥(sticky floors)’과 상위계층의 유리한 지위가 세대 간 지속되는 ‘고착된 천장(sticky ceilings)’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이에 교육·보건·가족정책·자산형성·주거 및 지역격차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통해 취약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계층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이동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OECD,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2018).

9) UN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Leave No One Behind)’고 선언하고, 특히 ‘가장 뒤처진 사람들에게 먼저 도달(reach the furthest behind first)’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UN 지속가능발전그룹(UNSDG)은 이를 2030 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적인 약속으로 설명하면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근절하고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며 사람들을 뒤처지게 하는 불평등과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음(UN,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5; UN Sustainable Development Group, 「Universal Values: Principle Two: Leave No One Behind」).

하여, 세대 간 불평등의 고착·심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¹⁰⁾.

또한, 제4호는 “불평등의 측정·평가 및 정책의 수립·시행은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야 하며, 국민의 체감 수준과 실제 현황 간의 괴리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불평등 정책의 수립·시행에 객관적 자료뿐만 아니라 국민이 인식·체감하는 불평등을 함께 고려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다만, 기본원칙은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객관적 자료와 국민의 인식 등 다양한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보다 포괄적이고 간결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¹¹⁾

10) 구체적인 대안으로 “세대 간 불평등의 고착·심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를 고려할 수 있음

11) 구체적인 대안으로 “불평등의 측정·평가 및 정책의 수립·시행은 객관적 자료와 국민의 인식 등 다양한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를 고려할 수 있음

※ 제정안 원문

정태호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제3조(기본원칙) 불평등 완화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각 영역의 불평등은 상호 연관되어 누적·심화될 수 있으므로,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통한 불평등의 심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불평등의 측정·평가 및 정책의 수립·시행은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야 하며, 국민의 체감 수준과 실제 현황 간의 괴리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불평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6. 불평등 완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민의 실질적인 기회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정태호의원안 제6조~제8조, 문진석의원안 제16조~제18조)

정태호의원안	문진석의원안
○ 기본계획(안 제6조) - 명칭: 불평등 완화 기본계획 - 수립주체: 국무총리 - 수립주기: 5년 - 포함사항 1. 불평등 완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주요 영역별 불평등의 현황과 전망 3.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정책 추진의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절차: 불평등완화위원회 심의 후 확정	○ 기본계획(안 제16조) - 명칭: 불평등해소기본계획 - 수립주체: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 - 수립주기: 5년 - 포함사항 1. 불평등 해소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주요 영역별 불평등의 현황과 전망 3.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에 따른 분야별 불평등 수준 및 목표치 4.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5.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6. 정책 추진의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절차: 불평등대응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 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행계획(안 제7조) - 명칭: 연도별 시행계획 - 수립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 수립기간: 매년 -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다음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국무총리에 제출 ② (국무총리) 제출된 시행계획 점검 후 필요시 해당 기관에 조정 요청, 추진실적 분석·평가 후 불평등완화위원회에 통보	○ 시행계획(안 제17조) - 명칭: 연도별 시행계획 - 수립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 수립기간: 매년 -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다음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
○ 계획 수립·시행의 협조(안 제8조) -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수립 주체의 관련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	○ 계획 수립·시행의 협조(안 제18조) -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수립 주체의 관련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

두 제정안은 불평등 정책을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정태호의원안은 국무총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반면, 문진석의원안은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불평등 정책은 소득·자산·교육·보건의료·주거·지역 등 다수의 정책영역에 걸쳐 있고 관계 부처도 다양하므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개별 정책을 연계·조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다만, 두 제정안은 기본적인 계획 수립체계는 유사하나, 기본계획의 수립주체와 포함사항, 시행계획의 조정절차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기본계획의 수립주체와 관련하여, 정태호의원안은 국무총리가 불평등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반면, 문진석의원안은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가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정태호의원안과 같이 국무총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하는 방식은 기본계획의 수립·집행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및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관리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음. 반면, 문진석의원안과 같이 대통령 소속 위

원회가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은 여러 부처에 걸친 불평등 정책을 범정부적 관점에서 종합·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본계획의 수립주체와 실제 정책의 집행주체가 분리됨에 따라 계획의 집행책임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

현행 입법례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이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는 방식과, 「인구전략기본법」과 같이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방식이 모두 존재하므로¹²⁾, 불평등 정책의 특성과 범정부적 조정 필요성, 계획의 집행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주체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 소관 부처의 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례를 고려할 때, 법체계상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주체는 해당 법률을 소관하는 부처의 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불평등 완화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주체를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둘째, 기본계획의 포함사항과 관련하여, 두 제정안은 불평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주요 정책과제와 추진방법, 기본계획에 관한 분

12) 예를 들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정부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그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 한편, 「인구전략기본법」은 대통령 소속 인구전략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제32조 및 제36조)

석·평가,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등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문진석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에 따른 분야별 불평등 수준 및 목표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에 따른 분야별 불평등 수준 및 목표치를 기본 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불평등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중·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구체화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또한, 기본계획에 분야별 목표치를 설정할 경우 이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연차별 목표 및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셋째, 시행계획의 조정절차와 관련하여, 정태호의원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국무총리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문진석의원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불평등대응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점검·조정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연계·조정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총괄하는 주체가 각 기관의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문진석의원안에도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조정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서울특별시는 시·도에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불평등

완화와 관련된 유사한 계획을 이미 수립·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시행계획을 추가로 수립·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계획 간 중복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존 관련 계획이 기본계획의 취지 및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획으로 시행계획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넷째, 법률의 체계와 관련하여, 정태호의원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먼저 규정한 후 이를 심의하는 불평등완화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문진석의원안은 불평등대응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먼저 규정한 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본법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사회보장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다수의 기본법에서 정책의 기본적인 추진체계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먼저 규정하고, 이를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그 다음에 규정하고 있음. 특히, 「인구전략기본법」은 대통령 소속 인구전략위원회를 기본계획의 수립주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먼저 규정한 후 인구전략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¹³⁾.

따라서 조문의 체계 및 배열에 있어서는 정태호의원안과 같이 기본

13) 「인구전략기본법」은 제32조에서 인구전략위원회의가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제33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후, 제36조에서 대통령 소속 인구전략위원회의의 설치·구성 및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먼저 규정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그 다음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 원문

정태호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제6조(불평등 완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불평등 완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불평등 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평등 완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주요 영역별 불평등의 현황과 전망 3. 불평등 완화 정책의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불평등 완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불평등 완화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2조에 따른 불평등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불평등해소기본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불평등해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평등 해소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주요 영역별 불평등의 현황과 전망 3.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에 따른 분야별 불평등 수준 및 목표치 4. 불평등 해소 정책의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5.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6. 불평등 해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조달방안 7. 그 밖에 불평등 해소 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정태호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2조에 따른 불평등완화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태호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제8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실태조사·지표개발 및 실적평가 등

(정태호의원안 제9조~제11조, 문진석의원안 제19조~제21조)

정태호의원안	문진석의원안
○ 불평등 실태조사(안 제9조) - 조사목적: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불평등 완화 정책을 수립 - - 조사주체: 정부 - 조사주기: 3년 - 실태조사 공표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명시	○ 불평등 실태조사(안 제20조) - 조사목적: 기본계획 수립,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 등 효율적인 불평등 해소 정책을 수립 - 조사주체: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 - 조사주기: 5년 - 실태조사 공표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명시
○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보급·평가(안 제10조) - 실시주체: 정부 - 지표에 따른 평가실시 및 결과공표 근거 명시	○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관리(안 제19조) - 실시주체: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 - 지표에 따른 평가실시 및 결과공표 근거 명시 - 지표 산출을 위한 국가데이터처장 및 국세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위원회의 자료 요구 근거
※ 시행계획 수립 규정(안 제7조제3항)에 평가 규정 - 국무총리가 추진실적 분석·평가 후 불평등완화위원회에 통보	○ 추진실적의 평가(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 평가주체: 불평등대응위원회 - 평가환류: 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 통보, 중앙행정기관 장 등은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
○ 불평등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안 제11조) - 작성주체: 국무총리 - 작성주기: 3년 - 작성근거: 실태조사 결과 및 다차원적 지표의 평가결과 - 포함내용 1.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에 따른 다차원적 불평등 수준의 변화 추이 2. 영역별 불평등의 원인 분석 및 정책 여건 평가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결과 4. 향후 정책 개선 방향 5. 기타 필요한 사항	○ 불평등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안 제21조제4항 ~ 제6항) - 작성주체: 불평등대응위원회 - 작성주기: 매년 - 작성근거: 다차원적 지표의 평가결과 - 포함내용 1. 다차원적 불평등 수준의 변화 추이 2. 영역별 불평등의 원인 분석 및 정책 여건 평가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결과 4. 향후 정책 개선 방향 5. 기타 필요한 사항

두 제정안은 불평등의 현황과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평등 실태조사,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관리,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불평등 종합보고서의 작성·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구체적인 조사목적 및 주기, 행정데이터의 활용, 평가결과의 환류 및 종합보고서의 작성주기 등에서 차이가 있음.

불평등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정책의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지표를 마련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불평등 정책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각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정태호의원안은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불평등 완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반면, 문진석의원안은 기본계획 및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수립·개발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실태조사는 불평등의 현황과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조사의 목적에 기본계획과 지표개발을 함께 명시하는 문진석의원안이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보임. 또한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최신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실시주기를 기본계획의 수립주기와 연계하여 5년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관리와 관련하여, 문진석의원안 제19조제3항¹⁴⁾은 불평등대응위원회가 다차원적 불평등지표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행정데이터를 국가데이터처장 및 국세청장, 그 밖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다양한 영역의 불평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이 보유한 행정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자료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지표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의 다차원 불평등 관련 연구에서도 소득·자산 등에 관한 행정데이터가 관계 기관에 존재함에도 전수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기관별 데이터의 연계·결합 및 표준화에도 한계가 있어 불평등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음¹⁵⁾.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데이터를 증거기

14) <문진석의원안>

제19조(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관리) ① 위원회는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주요 사회경제적 영역의 불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다차원적 불평등지표를 개발·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및 국세청장,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지표 산출을 위하여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 15)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주소 - 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 2025;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국회,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주소 드러낸 '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

반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다만, 문진석의원안은 제공대상을 ‘행정데이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특히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¹⁶⁾에 따른 과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및 제공요건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제28조의2부터 제28

보고서’ 12.23(화) 발표 - 자산을 중심으로 양극화 커지는 구조적 불평등 심화’, 2025년 12월 22일자
1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채송이나 조세법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의5까지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및 가명정보의 처리·결합 등에 관한 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¹⁷⁾에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이용 목적과 제공대상이 되는 자료·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지표 산출을 위하여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데이터의 범위와 이용목적은 보다 구체화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자료연계 및 목적 외 이용 제한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행정데이터 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제정안의 과세정보 요구 근거가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표준입법모델에 부합하지 않아 현행 규정만으로는 과세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17)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 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공공부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다. 아이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득 및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의 결정·환급 내역

다.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4.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 및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가명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과세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제공 대상·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셋째, 추진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정태호의원안은 국무총리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불평등완화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결과의 정책 환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반면, 문진석의원안은 위원회가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는 그 결과가 이후 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이 정책의 환류 및 성과관리 측면에서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넷째, 불평등 종합보고서의 작성·공표와 관련하여, 정태호의원안은 실태조사의 실시주기와 동일하게 3년마다 종합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하는 반면, 문진석의원안은 매년 종합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불평등 종합보고서는 불평등의 현황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의 추진 실적 및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과 국회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특히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합보고서 역시 매년 작성·공표하도록 하여 연차별 정책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제정안 원문

정태호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제9조(불평등 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불평등 완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주요 영역의 불평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불평등 실태조사)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 등 효율적인 불평등 해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주요 영역의 불평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보급 및 평가) ① 정부는 다차원적 불평등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에 따라 다차원적 불평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보급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관리) ① 위원회는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주요 사회경제적 영역의 불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다차원적 불평등지표를 개발·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다차원적 불평등지표를 이용하여 다차원적 불평등의 수준을 매년 조사·평가하고

정태호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제11조(불평등 종합보고서) ① 국무총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제10조제2항에 따른 다차원적 불평등 수준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3년마다 불평등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에 따른 다차원적 불평등 수준의 변화 추이 2. 영역별 불평등의 원인 분석 및 정책 여건 평가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결과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및 국세청장,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지표 산출을 위하여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관리 및 공표와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추진실적의 평가) ① 위원회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다차원적 불평등지표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불평등 해소 정책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

정태호의원안	문진석의원안
4. 향후 정책 개선 방향 5. 그 밖에 다차원적 불평등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종합보고서를 불평등 완화 정책의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종합보고서의 작성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차원적 불평등 수준의 변화 추이 2. 영역별 불평등의 원인 분석 및 정책 여건 평가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결과 4. 향후 정책 개선 방향

바. 불평등 정책의 추진 기관

(정태호의원안 제12조, 문진석의원안 제6조~제15조)

정태호의원안	문진석의원안
○ 불평등완화위원회(안 제9조) - 명칭: 불평등완화위원회 - 소속: 국무총리 소속 - 존속기한: 별도로 없음	○ 불평등대응위원회(안 제6조~제15조) - 명칭: 불평등대응위원회 - 소속: 대통령 소속 - 존속기한: 법률 시행일부터 5년
- 기능: 심의·조정 기구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3) 불평등 완화 정책의 조정 및 협력 4) 기타 불평등 완화 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기능: 정책추진 기구 1) 불평등 해소 정책의 기본방향 2)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계획의 심의·조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불평등 해소 정책의 조정 및 협력 4)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관리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평등 해소 정책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6)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정책개선 권고, 공론화 등)
- 구성: 25인 이내 1) 위원장: 국무총리 2) 부위원장: 없음 3)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4) 위촉위원: 불평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임기 2년)	- 구성: 20~25인 1) 위원장: 대통령 2) 부위원장(2인): 국무총리, 대통령 지명 위원 3) 당연직위원: ①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한 시·도지사 3) 위촉위원: 불평등 해소 정책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 령이 위촉하는 사람(임기 2년) 4) 간사: 국무조정실장 5) 기타: 위원의 결격사유·신분보장 규정
- 운영 별도의 법률 규정사항 없음	- 운영 ① 회의 개최 요건(재적위원 5인 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 개의/의결 요건(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 ③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 ④ 지원조직: 사무기구 및 전문 연구기관(지정) ⑤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의견진술·자료 제출 등 요구권

(1) 각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입법례

두 제정안은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여러 정책영역에 걸친 불평등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정태호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불평등완화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불평등 완화 정책의 조정·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문진석의원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불평등대응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며, 위원회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심의·조정,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관리, 정책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및 정책개선 권고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조직으로 사무기구 및 전문 연구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불평등 문제는 소득보장·조세·교육·보건의료·주거·고용·지역정책 등 다수의 정책영역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걸쳐 있으므로, 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종합·조정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이와 관련된 현행 입법례를 살펴보면, 「양성평등기본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두어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인구전략기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인구전략위원

회를 두어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등 인구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조정위원회를 두는 방식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립·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은 모두 관련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있음.

[범정부 정책위원회 관련 입법례]

구분	양성평등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근거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인구전략기본법」
소속	국무총리 소속	대통령 소속
위원장	국무총리	대통령
기본계획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수립, 위원회 심의	위원회가 직접 수립
주요기능	기본계획·시행계획 심의, 정책 추진실적 점검, 관련 사업 조정·협력, 정책 평가·제도개선, 국가성평등지수 등 심의·조정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심의·평가, 인구정책 조정,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방향·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전협의 등
성격	범정부 정책심의·조정	범정부 정책수립·조정
제정안과 유사성	정태호의원안과 유사	문진석의원안과 유사

(2) 위원회의 소속 및 위상

정태호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두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반면, 문진석의원안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두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설치하는 경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와 범정부적 추진력을 높이고 다수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반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

을 맡는 위원회의 특성상 정책의 상시적인 조정·관리보다는 주요 정책 방향의 설정 및 범정부적 조정에 보다 적합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음.

한편,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설치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을 조정하는 지위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이행과 연계하여 관계 부처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정·관리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음. 다만,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비하여 정책적 우선순위의 부각이나 범정부적 추진력 확보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불평등 정책에 요구되는 범정부적 추진력과 정책조정 수준, 지속적인 정책관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의 위상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지난 2026년 8월부터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기에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 협의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장을 국무총리, 부위원장을 부총리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통합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사회대개혁위원회·사회보장위원회 등 기존 유사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원회 신설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위원회의 기능 및 성격

정태호의원안에 따른 불평등완화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불평등완화 정책의 조정·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등 주로 관계 행정기관의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

반면, 문진석의원안에 따른 불평등대응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다차원적 불평등지표를 개발·관리하며 정책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는 등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문진석의원안은 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개선 또는 제도정비를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처리결과를 제출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위원회가 권고내용과 불이행 사유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실시하고 한시적인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차이는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도 나타남. 정태호의원안은 위원회의 세부적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반면, 문진석의원안은 회의의 소집·의결 요건,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사무기구의 설치,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견 제출 요청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운영체계를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태호의원안의 불평등완화위원회가 범정부 정책의 심의·조정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반면, 문진석의원안의 불평등대응위원회는 심의·조정에 더하여 정책의 수립·평가·개선 및 공론화 등에 직접 관여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불평등 정책의 실제 수립·집행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기능을 범정부 정책의 심의·조정에 중점을 둘 것인지, 정책의 수립·평가·개선 및 공론화까지 확대할 것인지 검토하고, 이에 따라 분과위원회·사무기구 등 위원회의 권한과 조직·운영체계를 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 단위 실행계획 수립 등을 위해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사무기구 신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정태호의원안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불평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문진석의원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연직위원으로 두는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시·도지사¹⁸⁾와 불평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불평등 정책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보건·교육·주거·지역정책 등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진석의원안과 같이 시·도지사가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의 연계·조정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위원회의 존속기한

정태호의원안은 불평등완화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문진석의원안은 불평등대응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하는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그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법률에 존속기한이 규정된 위원회는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¹⁹⁾. 이러한 존속

18)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한 제도는 위원회의 불필요한 장기 존속을 방지하고 그 존속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정태호의원안의 경우에도 불평등완화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존속기한은 불평등 정책의 중·장기적 성격과 기본계획의 수립주기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필요가 있음. 문진석의원안이 기본계획의 수립주기와 동일하게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은 이러한 법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한편, 문진석의원안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하면서,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 시행 후 4년이 되는 때에 임기가 시작되는 위촉위원의 경우 그 임기가 1년으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여 위촉위원의 임기를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1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 제정안 원문

정태호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제12조(불평등완화위원회) ① 불평등 완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불평등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불평등 완화 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평등 완화 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불평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불평등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불평등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불평등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7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불평등 해소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불평등해소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불평등 해소 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평등 해소 정책 추진실적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

정태호의원안	문진석의원안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불평등 해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⑤ 위원 중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정태호의원안	문진석의원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

정태호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연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위원회 참석 및 의견진술 2. 불평등 해소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3. 불평등 관련 조사·연구 또는 검토 결과 제출 4. 위원회 부의 안전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정태호의원안	문진석의원안
	② 제1항 각 호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평가결과와 재정운용의 연계(문진석의원안 제22조)

문진석의원안

○ 재정운용과의 연계(안 제22조)

- 기획예산처장관은 불평등대응위원회의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음

문진석의원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평등 해소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불평등 관련 정책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에 환류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또한 불평등 해소를 범정부적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경우 그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재정운용 과정에서 고려하도록 하는 취지도 인정될 수 있음.

다만, 현행 입법례를 살펴보면 특정 정책목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재정과 연계하는 경우에도 그 반영대상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예를 들어, 「성별영향평가법」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책평가 결과의 재정연계 관련 입법례]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비해 제정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어떠한 재정운용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하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특히 불평등 관련 정책에는 사회보장·교육·보건의료·주거·조세·지역정책 등 광범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이 포함될 수 있고, 재원의 배분은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정책의 우선순위 및 시급성, 재정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불평등 정책의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연계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인정될 수 있으나, 별도의 구체적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선언적 규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대상과 방식을 명확히 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체계와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인구전략기본법」 등 유사 입법²⁰⁾를 참고하여, 불평등 대응정책의 기획·조정·평가·환류 체계를 통한 정책성과 제고를 위해 불평등 대응 관련 사업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위원회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0) 「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인구 관련 사업(일·가정 양립 사업, 지역별·세대별 인력 활용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관련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인구관련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구관련사업 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구전략위원회와 매년 4월 30일까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투자 방향

2.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와의 협의를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에 대한 소관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투자 방향

2.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3. 그 밖에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인구관련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구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시 제41조에 따른 인구정책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인구전략위원회는 중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인구 관련 예산사업을 분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현황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절차·방법,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절차·방법, 제3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의 작성·제출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 원문

문진석의원안

제22조(재정운용과의 연계)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아. 정책개선의 권고(문진석의원안 제29조)

문진석의원안
○ 정책개선 권고(안 제29조) - 권고주체: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 - 권고내용: 위원회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정책 개선·제도정비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이행관리: ① 관계 행정기관은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② 관계 행정기관은 권고사항 권고 미이행 시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지 - 공표: 위원회는 권고·의견표명 및 미이행 사유 등 공표 가능

문진석의원안은 불평등대응위원회가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정책개선 또는 제도정비를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는 권고·의견표명 및 미이행 사유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권한은 문진석의원안이 불평등대응위원회를 단순한 심의·조정기구를 넘어 불평등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조정하는 정책조정기구로 설계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정태호의원안의 불평등완화위원회와 차이가 있음.

한편, 제정안의 정책개선 권고제도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개선 권고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²¹⁾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등에 정책·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및 미이행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권고·의견표명, 미이행 사유 및 이행실태 점검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의 정책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의 비교]

구분	불평등대응위원회(문진석의원안)	국가인권위원회
법적근거	제정안 제29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권고목적	불평등 해소	인권의 보호·향상
권고대상	관계 행정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권고내용	정책개선·제도정비 권고 또는 의견표명	정책·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의견표명
이행관련	권고 존중·이행 노력, 처리결과 제출	권고 존중·이행 노력, 이행계획 통지(90일 이내)
미이행 시	미이행 사유 통지	미이행 사유 통지
이행점검	별도 규정 없음	인권위원회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실시
공표	권고·의견표명 및 미이행 사유 등	권고·의견표명, 미이행 사유 및 이행실태 점검결과

21)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불평등 문제가 여러 부처의 정책과 관련되는 점을 고려하면, 범정부적 정책조정기구가 관계 행정기관에 정책개선을 권고하고 그 처리 결과를 제출받도록 하는 것은 정책조정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음.

다만, 제정안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기능과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개선 권고 기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의 불평등 개념은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차별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보호 등 인권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 특히,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의 개념에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어²²⁾,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권을 비롯한 기본적 권리의 보호·향상과 관련하여 정책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제정안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와 그 대상이 일부 중첩될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도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의 정의를 정립하고 비적정 주거 거주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관계 기관에 권고한 바 있음²³⁾.

2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3)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서 국무총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의 정의를 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기후재난 피해(예상) 지역과 주거유형을 사전에 파악하며, 비적정 주거 거주자에 대한 재난 알림 및 정책 안내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개선 권고」, 2025. 7. 10.)

따라서 불평등대응위원회의 정책개선 권고가 인권과 관련된 정책영역에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정책개선 권고기능과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 위원회 간 기능 및 역할의 관계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 원문

문진석의원안
제29조(정책 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 개선 또는 제도 정비를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권고·의견표명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자. 공론화(문진석의원안 제30조)

문진석의원안
○ 공론화(안 제30조) - 실시주체: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 - 주요내용: 기본계획의 수립, 정책 개선 권고 등 불평등 해소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전문가 및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 필요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 설치 - 공론화 시 공정한 참여 기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보장

문진석의원안은 불평등대응위원회가 기본계획의 수립, 정책개선 권고 등 불평등 해소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전문가 및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공정한 참여 기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²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

2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공론화 등)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또는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를 거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론화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기한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가 다루는 사항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과 의결을 거쳐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다.

⑤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⑥ 공론화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

이 예상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및 일반시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공론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한시적인 공론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불평등 해소 정책은 조세·복지·교육·주거 등 다양한 정책영역과 관련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따라 계층 또는 이해관계자 간 이해가 상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주요 정책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려는 취지는 의미가 있을 수 있음.

다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경우 관리시설의 입지 등 정책대상과 이해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사회적 갈등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정책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제정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정책개선 권고 등 불평등 해소 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론화의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설정될 수 있음.

또한, 관계 행정기관은 기본계획이나 개별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청회·토론회·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 정책 전반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정 공론화 절차 및 공론화위원회 설치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지는 통상적인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의견수렴과 구별되는 공론화의 필요성 및 제도화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다. 이 경우 위원회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정안 원문

문진석의원안

제30조(공론화)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정책 개선 권고 등 불평등 해소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전문가 및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을 거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론화 시 공정한 참여 기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차. 분야별 불평등 정책

(정태호의원안 제13조~제18조, 문진석의원안 제23조~제28조)

정태호의원안	문진석의원안
○ 소득불평등의 완화(안 제13조) - 사전적·사후적 분배가 균형을 이루는 분배체계를 구축 - 취약계층의 소득보장과 공공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확보	○ 소득불평등의 해소(안 제23조) - 사전적·사후적 분배가 균형을 이루는 분배체계를 구축 -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
○ 자산불평등의 완화(안 제14조) - 자산 불평등의 구조적 요인과 자산 보유 수준을 고려한 재분배 정책 추진 - 자산 불평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자산 관련 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마련	○ 자산불평등의 해소(안 제24조) - 자산의 형성 및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요인과 자산 보유 수준을 고려한 정책 수립·추진 - 자산 불평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자산 관련 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마련
○ 교육불평등의 완화(안 제15조) - 공교육의 질과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추진 - 교육 불평등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	○ 교육불평등의 해소(안 제25조) - 공교육의 질과 기능을 강화하고 사교육 의존을 완화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추진 -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교육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 구축
○ 건강불평등의 완화(안 제16조) - 소득·자산·교육·주거 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정책 추진 -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 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예방·관리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강화	○ 건강불평등의 해소(안 제26조) - 건강의 경제적·사회적 결정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정책을 수립·추진 -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 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취약지역 등을 해소하며 예방·관리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강화
○ 주거불평등의 완화(안 제17조) -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대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 안정 정책 추진 -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 간 주거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주거복지 및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주거불평등의 해소(안 제27조) -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대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 안정 정책을 수립·추진 -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 간 주거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등을 통하여 최저 주거기준 보장

정태호의원안	문진석의원안
○ 지역불평등의 완화(안 제18조) - 지역 간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접근성 등의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시행 - 지역 간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인구구조, 산업기반, 재정여건 및 공공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 - 지역 간 불평등 수준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관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	※ 지역불평등 완화 정책 관련 조문은 별도로 없음
※ 사회변화에 따른 불평등 해소 관련 조문은 별도로 없음	○ 사회변화에 따른 불평등 해소(안 제28조) -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

두 제정안은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주요 영역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불평등 완화·해소 정책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불평등을 단일한 소득격차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격차와 그 상호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차원적 접근에 따라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구체적으로 두 제정안은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분야의 불평등 완화·해소에 관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 분야별 정책 방향과 강조점에는 일부 차이가 있음. 또한 정태호의원안은 지역 간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고용 및 사회서비스 접근성 등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불평등 완화 정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문진석의원안은 기후위기·디지털 전환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

거나 심화되는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변화에 따른 불평등 해소 정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지역 간 격차와 기후위기·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새로운 불평등은 모두 다차원적 불평등의 현황과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정책영역이라는 점에서, 각 제정안의 관련 규정을 함께 반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 분야별 정책내용에도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첫째, 소득불평등 완화·해소와 관련하여 두 제정안 모두 사전적·사후적 분배구조의 개선과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태호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취약계층의 소득보장과 공공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확보를 명시하고 있음.

둘째, 자산불평등 완화·해소와 관련하여 정태호의원안은 자산불평등의 구조적 요인과 자산 보유수준을 고려한 재분배 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문진석의원안은 자산의 형성 및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요인과 자산 보유수준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자산불평등의 발생원인을 규정하는 방식과 정책대상의 표현에 차이가 있음.

셋째, 교육불평등 완화·해소와 관련하여 정태호의원안은 교육불평등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문진석의원안은 사교육 의존 완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에 따른 교육격차 완화, 교육기회의 실질적 평등 보장 및 교육수준의 격차 해소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규정하고 있음.

넷째, 건강불평등 완화·해소와 관련하여 두 제정안 모두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간 건강격차 완화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진석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의료취약지역 등의 해소를 명시하고 있음.

다섯째, 주거불평등 완화·해소와 관련하여 정태호의원안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 간 주거격차 완화와 함께 주거지원·주거복지 및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문진석의원안은 주거지원 등을 통한 최저주거기준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

이와 같은 차이는 각 제정안이 분야별 불평등 정책에서 중점을 두는 정책수단과 규정방식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각 제정안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해당 분야의 불평등 완화·해소를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정책요소로서 상호 배타적인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각 제정안의 내용을 종합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어느 정도까지 법률에 명시할 것인지는 기본법의 성격과 개별 분야의 법률·정책체계,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 원문

정태호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제13조(소득 불평등의 완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전적·사후적 분배가 균형을 이루는 분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장과 공공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소득 불평등의 해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적·사후적 분배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자산 불평등의 완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산 불평등의 구조적 요인과 자산 보유 수준을 고려한 재분배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산 불평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자산 관련 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자산 불평등의 해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산의 형성 및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요인과 자산 보유 수준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산 불평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자산 관련 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불평등의 완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교육의 질과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불평등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 불평등의 해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교육의 질과 기능을 강화하고 사교육 의존을 완화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교육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정태호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제16조(건강 불평등의 완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자산·교육·주거 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 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예방·관리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건강 불평등의 해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의 경제적·사회적 결정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 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취약지역 등을 해소하며 예방·관리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주거 불평등의 완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대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 안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 간 주거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주거복지 및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주거 불평등의 해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대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 안정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 간 주거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등을 통하여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 불평등의 완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 고용 및 사회 서비스 접근성 등의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인구구조, 산업기반, 재정여건 및 공	제28조(사회변화에 따른 불평등의 해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태호의원안	문진석의원안
공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역 간 불평등 수준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관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카. 그 밖의 사항 (정태호의원안 제19조·제20조, 문진석의원안 제31조·제32조)

정태호의원안	문진석의원안
○ 국회 보고(안 제19조) -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등: 확정 후 지체없이 국회 제출 - 불평등 종합보고서: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제출	○ 국회 제출 등(안 제31조) -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등: 확정 후 지체없이 국회 제출 - 불평등 종합보고서: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제출
○ 조사 및 연구(안 제20조)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불평등 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지원 - 조사·연구를 연구소·대학 등 전문기관·단체에 위탁 가능	<별도 규정 없음>
<별도 규정 없음>	○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안 제32조) -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

두 제정안은 불평등 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칙적 사항으로 국회에 대한 보고·제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밖의 보완적 규정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음.

구체적으로 두 제정안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등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불평등 종합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유사한 국회 보고·제출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정태호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평등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연구소·

대학 등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반면, 문진석의원안은 이러한 조사·연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불평등대응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벌칙적용상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은 보칙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수 있음.

첫째, 국회 보고·제출에 관한 규정은 불평등 정책의 투명성과 국회의 정책점검 기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불평등 정책은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 걸쳐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정책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국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입법 및 예산안·결산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둘째, 정태호의원안의 조사·연구에 관한 규정은 불평등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조사·연구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불평등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격차와 그 상호 연관성 및 구조적 원인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문진석의원안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은 불평등대응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및 공무원 의제의 범위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진석의원안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이는 민간위원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전제로 하는 벌칙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이 민간위원을 벌칙 적용 전반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입법례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등이 있음²⁵⁾. 이들 위원회는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금융감독·제재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사·결정 또는 제재 권한을 행사한다는 특징이 있음.

2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행정심판법」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진석의원안의 불평등대응위원회도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정책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며 관계 행정기관에 정책개선 또는 제도정비를 권고하는 등 불평등 정책의 수립·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간위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불평등대응위원회는 개별 사건을 조사·구제하거나 국민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권한보다는 정책의 수립·심의·조정 및 권고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는데, 문진석의원안은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범위를 「형법」 상 수뢰죄 등²⁶⁾에 한정하지 않고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 전반으로 하고 있어, 구체적인 직무와 권한 및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²⁷⁾ 공무원의 신분을 전제로 하는 다른 벌칙규정까지 적용됨.

26)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7)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

참고로, 불평등대응위원회와 유사하게 정책의 수립·심의·조정 및 추진 실적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공무원 의제 범위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수뢰죄 등에 한정²⁸⁾하고 있으며, 「인구전략기본법」상 인구전략위원회는 민간위원을 「형법」 제127조의 공무원상 비밀누설죄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수뢰죄 등에 한정²⁹⁾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음.

따라서, 불평등대응위원회에 조사·구제 또는 처분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에 비하여 민간위원의 형사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공무원 의제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지방위원회, 제19조제1항·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8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29) 「인구전략기본법」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정안 원문

정태호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제19조(국회 보고) 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 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1조에 따라 불평 등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 및 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평등 완화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국회 제출 등)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확정 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매년 제21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V. 입법의 재정영향

국회예산정책처는 정태호의원안에 따라 불평등 완화 기본계획 수립, 불평등 실태조사 및 불평등완화위원회 설치 등을 시행할 경우 5년간 총 7억 7,700만원(연평균 1억 5,500만원) 이상으로 추계하였음.

[정태호의원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불평등 완화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71	-	-	-	-	71	-
불평등 실태조사(안 제9조)	313	-	-	313	-	627	-
불평등완화위원회 설치(안 제12조)	16	16	16	16	16	78	16
합계	400	16	16	329	16	777	15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2026.8.27

주: 1.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문진석의원안에 따라 제정안에 따라 불평등대응위원회 설치, 불평등해소기본계획 수립 및 불평등 실태조사 등을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4억 6,400만원(연평균 9,300만원) 이상으로 추계하였음.

[문진석의원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불평등대응위원회 설치(안 제6조 및 제8조)	16	16	16	16	16	78	16
불평등해소기본계획 수립 (안 제16조)	71	-	-	-	-	71	-
불평등 실태조사(안 제20조)	313	-	-	-	-	313	-
합계	400	16	16	16	16	464	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2026.8.27

주: 1.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148